



[정보공개서 등록 번호 : 20251506 ]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25.12.23 ]

www.catmart.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12.23 ]

## [ 캣 마 트 ]

### 정 보 공 개 서

[(주)선진펫]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 . . .

(주)선진펫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부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79]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53-982-1550]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53-986-154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부, 053-982-1550]

#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지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선진펫	캣마트 외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79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2.03.23	2012.04.01	이권형	053-982-1550	053-986-1545
	법인등록번호	170111-0455908	사업자등록번호	502-86-16211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이권형/ (주)선진펫	캣마트 외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79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권형	053-982-1550	053-986-15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이석형/ (주)선진펫	캣마트 외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79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권형	053-982-1550	053-986-1545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감사	장현환/ (주)선진펫	캣마트 외1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79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권형	053-982-1550	053-986-1545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 포함)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캣마트]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캣마트	-
상 호	캣마트 00점	-
영업표지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참조
광 고	해당 없음	-
그 밖의 영업표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4년	16,597,828	10,495,616	6,102,212	46,185,147	768,379	1,052,661
2023년	15,666,125	9,442,955	6,223,170	45,390,174	862,174	1,351,020
2022년	14,567,703	8,091,935	6,475,768	41,517,181	956,409	1,289,542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이권형	대표이사	2012.03.23 ~ 현재	대표이사	회사경영
	이석형	사내이사	2015.12.01 ~ 현재	사내이사	회사경영
	장현환	감사	2012.03.23 ~ 현재	감사	회사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2	1	120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식회사 선진펫/ 펫마트	가맹본부가 다른 가맹사업 운영	2016.05.03.~ 현재	영업표지 펫마트(등록번호2016 0418)이라는 가맹사업 운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 (서비스표)	권리 내용	등록여부 및 등록일자	등록번호	상표권자	존속기간 만료일
-----------	-------	----------------	------	------	-------------



	제품사용 및 대가수수	등록일자 (2016.6.02)	4020128480000	주식회사 선진펫	2026.6.02
	제품사용 및 대가수수	출원일자 2025.09.12	출원번호 4020250171479		-

- \* 출원 중인 상표권은 등록 완료되기 전에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캐트마트]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계약체결 사실 없음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1년 11월 01일)

### 2. [캐트마트]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명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식회사 선진펫	캐트마트	이권형	가맹사업 시작 예정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송읍길 79

### 3. [캐트마트] 업종

영업표지	업종	
캐트마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반려동물 관련 상품





####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캣마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	-	2	2	-	2	2	-	2
서울	-	-	-	-	-	-	-	-	-
부산	1	-	1	1	-	1	1	-	1
대구	1	-	1	1	-	1	1	-	1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	-	-	-	-	-	-	-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 5. 최근 3년간 [캣마트]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4	-	-	-	-	-	-
2023	-	-	-	-	-	-
2022	-	-	-	-	-	-

#### 6. [캣마트]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식회사 선진펫	펫마트	20160418	기타 도소매	100/11	110/11	115/12



##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결과입니다.

(단위: 개/원, 부가세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	-	-	-	-	-	-	-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	-	-	-	-	-	-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8. [캣마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캣마트]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도	-	-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캣마트] 가맹점을 관리하는 가맹지역본부(지사)가 없습니다.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	손익계산서 반영
광고선전비	-	-	-	-	-	
판매촉진비	-	-	-	-	-	

## 11. 가맹금 예치 기관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23,(방촌동)	053-982-6501

☞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체결일의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기업 → 기업서비스 → 가맹금예치제도' 를 클릭한 다음 [(주)선진캐트]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 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마켓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
보험금액	예치금액	-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캣마트]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총계	11,000	-	-	-
가맹비	8,800	계약 체결일	당사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영업개시 전 : 교육 및 인력·정보 제공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함 · 영업개시 후 :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반환하지 않음
교육비	2,200	계약 체결일	교육 시작 1일 전 계약 해지	교육 시작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하게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	-	-
보증금	10,000	계약 체결일	당사 제공물품 등의 채무액 및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	계약 종료 30일내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1,000
가맹비	8,800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330㎡ 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면적 3.3㎡당 금액	반환조건	비고
총계	-	195,000~ 198,000	-	1950~ 1,980	-	-
전면간판	별지참조	8,000	설치 전	80	설치 전 계약취소	실측 후 산정
제품진열장		50,000	설치 전	500	설치 전 계약취소	-
매장설비		5,000	입고 전	50	입고 전 계약취소	-
초도물품(상품)		130,000	입고 전	1,300	입고 전 계약취소	-
인테리어		2,000~5,000	업체 별	20~50	계약에 따라 자율	보수공 사 필요시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업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가 귀하에게 별도로 부담시키는 비용은 없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9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캣마트]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첨부한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8) 당사는 가맹금 할부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전체 비용의	광고시행	시행 전	시행 후 소멸



		50%를 가맹점주들이 균등부담	7일 전	취소	
재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협의하여 결정	교육실시 15일 전	교육 전	교육실시 후 소멸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	-	-	21페이지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	-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직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매뉴얼 준수, 매출 현황, 서비스 상태, 각종 설비 관리,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 포함)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추가교육비	협의 결정	교육 시작 7일 전	교육 전	교육실시 후 소멸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이전비	협의 결정	점포이전 10일 내	점포이전불합의	점포이전 후 소멸	점포이전 합의시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가맹사업을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획득 및 이에 따른 조치사항

☞ 당사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당사가 이에 따른 대체 수단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운영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개월 전에 당사에 이에 대한 승인을 구하는 서면을 통지하고 당사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잔여계약기간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즉시 노하우 사용 및 영업을 중단하고,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시안과 당사 고유의 외장 인테리어, 비품, 집기 등의 영업표지를 계약 종료 7일 이내에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당사가 철거할 경우 비용은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공제하며, 부족분은 추가로 귀하에게 청구합니다.
- ②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결을 이유로 당사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집기, 시설설비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대한 채무를 종료 후 10일 이내에 완제하여야 하며, 연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또한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켓마트]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단위: 원, 부가세포함)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	-	-	-	-

\*당사는 도소매업에 해당합니다.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본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	-	-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2] 참조	당사에서 지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가맹점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가맹점 및 상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1차: 구두경고 2차: 서면경고 3차: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 및 서비스 공급 중단 또는 계약해지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지사)사업자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상품	권장가격(원)	비고
[별첨2]	[별첨2]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4.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애완동물 관련 상품 등 도소매업	캣마트, 펫마트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간 이격거리 2.5km(반경1.25km)	가맹계약서에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1.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합의 후 영업지역 조정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2.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3.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캣마트』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캣마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	-	-	-	-

7) 그 밖의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84	16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캣마트]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D-180 ~ D-90



예→④, 아니오→③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캣마트]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제34조 제1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상의 변경 사항(명의변경, 점포 규모 및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항, 제18조의 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가맹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점포 인테리어를 미착수 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영업방침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필수공급상품을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거나 타 업소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하였을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4조 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어 지급 정지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귀하가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 제정·개정 등에 따른 경우	제44조 제2항
○ 양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li> <li>-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li> <li>-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li> </ul>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제3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기 1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 ③ 당사가 승인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④ 당사와 양수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비는 면제하며, 그 계약기간은 귀하의 가맹계약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 ⑤ 귀하의 권리의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자신의 부담으로 당사가 정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당사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계의사를 가맹본부에게 서면 통지하고 가맹점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 상속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비용은 쌍방 간 협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 하에 대리경영을 시킬 수 있으며, 대리경영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캣마트]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 애완동물 용품 도소매 업종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 [캣마트] 영업시간은 09:00~22:00(월~토), 10:00~22:00(일) (설, 추석 당일 휴무) 입니다. 다만, 가맹점 및 상권의 특성에 따라 당사와 협의하여 영업일수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자율	자율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① 당사는 가맹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점검하고 당사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매뉴얼 준수, 매출 현황, 서비스 상태, 각종 설비 관리, 회계장부 열람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② 귀하는 당사가 가맹점의 점검이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운영시간 중 언제든지 귀하의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 당사는 [캣마트]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전국광고	브랜드광고	50%	50%	광고 세부계획 → 귀하에게 광고비 분담 내역 통지 → 귀하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당사에 납입 → 광고 시행	
	상품광고	50%	50%		
	가맹점 모집광고	100%	없음		
지역단위광고	매출활성화	없음	100%	해당 지역의 가맹점사업자들끼리 협의하여 분담	
단독광고	매출활성화	없음	100%	단독광고를 실시하는 가맹점사업자 부담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귀하는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와 협의를 거친 후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 및 귀하의 직원은 계약 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당사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허락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귀하가 계약 기간 내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가맹계약 제20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를 위반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가맹문의/ 상담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 담당자 상담 - 가맹계약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1일	8-9페이지 참조
입지선정	- 의사결정, 1차 시장조사 - 입지 지역분석 및 점포 확정	3일	
최종협의	- 가맹점 개설승인	1일	
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후 15일째부터 가능	
인테리어 공사	- 점포실측, 견적 산출 -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입고	15일	
인허가 취득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신청	3일	
교육훈련	- 점포운영교육 실시 (매장 인테리어 공사 시 진행)	3일	
오픈	- 초도상품 입고 및 가맹점 가오픈 - 영업개시	2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1)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2)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상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바집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상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lt;분할지급 시 절차&gt;</li>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 ]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 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 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사업부 053-982-1550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 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 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 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 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가맹사업부 053-982-1550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캣마트]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슈퍼 바이저 운영	가맹점 오픈시 교육(접객,진열,기타)	물품 및 사은품 지급	가맹계약기간	운영지원 컨설팅	-
우수가맹점 선정	친절도, 매출신장을, 등 기타	약 4,000만 원 매출할인	상반기/하반기	최대2%의 매출할인	본사 선정
매출부진 매장 운영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운영지원	직전 6개월간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맹계약기간	운영지원 컨설팅	본사 선정
마케팅 지원	온라인 광고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기타	매장당 광고비 최대 약 50만 원	가맹계약기간	매장 온라인 홍보	-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캣마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시장개요 및 운영방향	본사 강의	개점 전	필수교육
	세무 교육	지정 장소	개점 전	
	상품, 영업 교육	이론 및 실습	개점 전	
	운영 교육, 현장 실습	현장 실습	개점 전	
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협의	개별교육	개점 전	선택교육

###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캣마트]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시간	비용(단위: 만원)	비고
신규 교육	최대 10~15일 (60~80시간) 최소 40시간	220(VAT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상황에 따라 협의	없음	교통비·식비 등의 제반비용은 귀하 부담

###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영업지원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대구	대구점	대구시 남구 대명로 72
2	부산	부산점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0

###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6년 5개월	-

###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60,160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 및 배달어플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별첨 1 최근 3년간 재무상황
- 별첨 2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 별첨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별첨 4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 별첨 5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
- 별첨 6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 별첨 1 ]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 2 ] 구입강제품목 및 물품 구입 및 입차 현황

※아래 품목 및 가격은 당사의 경영방침 및 물가 변동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구입강제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구입권장 품목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별첨 3 ]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 4 ] 가맹점사업자의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 5 ] 가맹금예치신청서 양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별첨 6 ]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한국공정거래조정원

